저작권사용료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6. 26. 2006가합106755]



【전문】

【원 고】

【피 고】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송정우 외 1인)

【변론종결】2008. 6. 5.

【주문】

1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】피고는 원고에게 468,470,721원 및 이에 대한 2006. 9. 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.

【이유】

11. 사안의 개요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

가. 사안의 개요

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신탁하였으나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며 저작물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피고가 저작물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저작물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.

나. 전제된 사실관계

[이유]

11. 사안의 개요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

가. 사안의 개요

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신탁하였으나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며 저작물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피고가 저작물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저작물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.

나. 전제된 사실관계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